

[서식 예] 권리신고서

권 리 신 고 서

사 건 2000카0000 공시최고

권리신고인 〇〇〇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위 사건에 관하여 권리자 〇〇〇는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합니다.

아 래

- 1. 이 사건 공시최고 수표는 20○○. ○. ○. 신고인이 경영하는 ○○정육점에서 식육을 판매한 대금으로 신청외 ●●●로부터 받은 것으로 신고인은 위 수표를 선의취득 하였습니다.
- 2. 신고인은 위 수표의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사고수표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어 신고인은 발행인을 상대로 수표금청구소송을 제기 중에 있으므로 이에 권리신고합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소제기증명원 1통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제출법원	공시최고법원	의 의	• 권리신고는 제권판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증권의 소지자 그 밖의 이 해관계인 또는 등기·등록의무자 (등기·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 고의 경우)가 자기의 권리를 신고 하는 것임.
관련규정	·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함(민사소송법 제482조). ·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 지하거나,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함(민사소 송법 제485조).		
기 타	· 공시최고신청 이전에 그 수표를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연히 수표의 선의취득자의 실질 적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나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 그 수표는 당연 무효가 됨(대법원 1965. 11. 30. 선고 65다1926 판결).		